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2
----------	----

2022. 9. 28.(수)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 2022년 9월 5일
- 나. 발 의 자 : 김꽃임 의원 등 7인
- 다. 회부일자 : 2022년 9월 8일
- 라. 상정일자 : 제40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2022년 9월 20일 상정의결)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꽃임 의원)

가. 제안이유

- 「식물방역법」에 따라 우리도의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용 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명칭을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운영 조례」로 변경
- 현실에 맞게 조례의 전부개정(안 제1조 ~ 안 제6조 등)
- 병해충에 대한 용어 신설(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복순)

가. 제출배경

-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우리도의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용 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검토내용

- 이 조례안은 본칙 10개 조항과 부칙 2개 조항으로 구성됨
- 조례명을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운영 조례」로 변경함
- 안 제1조는 기존 조례의 잘못된 띄어쓰기를 정비함
-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기존 조례에서 제3조와 제4조가 제2조에 붙어 있는 오류를 바로잡음
- 안 제3조는 예찰·방제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근거 법령 약칭을 적용하였고, 띄어쓰기를 정비함
- 안 제4조는 예찰·방제단 구성인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각각 운영, 임무, 식물방제관의 권한, 전문인력 등, 전문교육, 시·군에 대한 지원을 명시함
특히, 안 제8조에서는 일부 용어를 순화된 용어로 정비함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서 조례로 위임한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의 타당성은 충분함
- 또한, 우리도 현실에 맞도록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등을 반영한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방제를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외래·검역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예찰·방제단의 설치)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농업기술원에 둔다.

제4조(예찰·방제단의 구성) ①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농업기술원장이되며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방제단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병해충 방제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8명 내외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제5조(예찰·방제단의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발생정보를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예찰·방제단의 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3. 중앙 및 시·군과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시·군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7.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

8. 그 밖에 도지사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7조(식물방제관의 권한) 법 제31조의2에 따라 도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제8조(전문인력 등) ① 도지사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가 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로 하고, 계약직 등을 채용할 수 있다.

제9조(전문교육) 도지사는 도 및 시·군의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제10조(시·군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시·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찰·방제단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 식물방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2. 4., 2011. 7. 14., 2013. 3. 23., 2016. 12. 2.>

1. “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2호의 병해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가. 종자식물(種子植物)·양치식물(羊齒植物)·이끼식물·버섯류

나. 가목에 규정된 것의 씨앗·과실 및 가공품(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병해충”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진균(真菌)·점균(粘菌)·세균(細菌)·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나. 곤충, 응애, 선충(線蟲),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

다. 잡초(그 씨앗을 포함한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31조의4(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 등) ①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 및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병해충(「산림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병해충은 제외한다)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두며, 시·군·자치구에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을 둔다. 이 경우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은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은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4.>

③ 제1항에 따른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와 제2항에 따른 중앙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도병해충예찰·방제단과 시·군·구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